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의 주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추가하고, 「감염병예방법」 상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, 센터 운영 및 업무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특기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질병관리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”을 각각 “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”으로 한다.

제26조의4 및 제2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4(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운영 등) ① 법 제63조의2에 따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(이하 “첨단백신센터”라 한다)의 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·지출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.

③ 센터장은 법 제63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, 관련 민간기관·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·연구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백신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26조의5(첨단백신센터의 업무) 법 제63조의3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치료제·백신 개발 지원
2. 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감염병 치료제·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·분석의 지원 업무
3. 그 밖에 첨단백신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6조의2(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) ① <u>질병관리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</u> 법 제60조의 3제1항에 따라 방역업무 종사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방역업무 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명령서에는 방역업무 종사기관, 종사기간 및 종사업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	제26조의2(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) ① <u>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질병관리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</u> 제2항에 따른 방역업무 종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되,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	③ <u>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 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<u>질병관리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</u> 제3항에 따라 방역업무 종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방역업무 종사명령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.	④ <u>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 -- ----- ----- -----.

<신 설>

<신 설>

제26조의4(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

운영 등) ① 법 제63조의2에 따
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(이하
“첨단백신센터”라 한다)의 장
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은 정
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
관리청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
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
와 수입·지출예산서를 이사회
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에
게 제출해야 한다. 이를 변경하
려는 경우에도 같다.

③ 센터장은 법 제63조의3제1항
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
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
관, 관련 민간기관·단체 또는
연구소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
임직원·연구원의 파견을 요청
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첨단백신센터의
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
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26조의5(첨단백신센터의 업무)

법 제63조의3제1항제4호에서

	<u>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</u> <u>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</u> 1. <u>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</u> <u>치료제·백신 개발 지원</u> 2. <u>법 제8조의6제4항에 따른 감</u> <u>염병 치료제·백신 개발을 위</u> <u>한 시험·분석의 지원 업무</u> 3. <u>그 밖에 첨단백신센터의 설</u> <u>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</u> <u>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</u> <u>인정하는 업무</u>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감염병정책과	
연 락 처	(043) 719 - 7130